

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12. 20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1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
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안전 번호	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출연금액
계			4,688,181
173	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	인재육성 장학사업	333,211
174	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	구민회관 등 운영 도서관 운영	4,354,97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민기)

-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2017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,
-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장학재단과 문화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출연이 가능하며,
- 사업내용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,
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,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이며, 설립 초기단계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, 영등포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창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. 따라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.
-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. 따라서,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는 것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1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“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영등포구장학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재산의 조성) 및 제16조(재정지원)

다. 사업내용

- 우수 고등학생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

라. 출연 필요성

-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의거 영등포구의 우수학생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으로 인재육성장학사업을 추진해왔으나,
- 2015년도 4월에 구가 기본재산 5억원을 출연하여 영등포구 장학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장학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2016년 영등포구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장학사업을 추진하였음
- 또한, 장학사업의 양적 질적 확대 필요로 업무량 증가와 장학기금 확보

노력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의 필요로 사무국장이 채용됨에 따라 안정적인 장학재단 운영의 인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나,

- 아직은 설립초기로 요구되는 장학사업의 충분한 충족이 어려우며 또한,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장학기금 및 인건비,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
- 따라서 영등포구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 예산을 출연하여 영등포구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범 위 : 지역인재육성 장학금, 인건비, 운영비

- 출연금액 : 333,211천원

※ 2017년도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17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재산의 조성) 및 제16조(재정지원)

참 고 사 항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
제6조(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1. 구의 출연금
 2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 3. 그 밖의 수입금
- ②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

제16조(재정지원)

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17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“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영등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
다. 사업내용

-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
- 영등포 구민회관 및 영등포아트홀 관리·운영
-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
- 문화예술의 국내·외 교류사업 등

라. 출연 필요성

-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, 구민회관 시설 및 영등포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등포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범 위

- 영등포문화재단 운영, 구민회관 및 아트홀 운영·관리, 문화행사 추진
- 영등포 구립공공도서관의 운영·관리

- 출연금액 : 4,354,970천원

- 영등포문화재단, 구민회관 및 아트홀 운영(문화체육과 소관) : 1,674,370천원
-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(교육지원과 소관) : 2,680,600천원

※ 2017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17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,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
참 고 사 항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

-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라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
-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직접 관리·운영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·배치한다.
- ②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공연, 전시, 문화강좌, 학술,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·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며, 구청장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, 선정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마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운영 및 관리)

-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